

예천군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예천군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 11. 3

예천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 예천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품에 대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소비자들이 우선 구매 소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 방안
-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생산품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직거래 활성화 지원(안 제6조)

-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
-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발굴 및 홍보·포상

○ 직거래실적이 우수한 유관기관 및 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다. 재정지원(안 제9조)

-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
-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연계 활동사업
-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다. 예산조치 : 추후반영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마. 입법예고결과 :
-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syyh2000@korea.kr

예천군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품에 대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소비자들이 우선 구매 소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생산품”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이나 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수축산식품을 말한다.
2. “지역생산업체”란 제1호의 지역생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기관·단체 등”이란 제8조 각 호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 방안
2.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생산품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직거래 활성화 지원)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
2.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포상
3.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유관기관 및 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제7조(소비제품 실태조사) 군수는 기관·단체 등이 소비하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구매협조 요청)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소비제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생산물로 대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예천군 관내 지방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신·증설하는 사업체
4.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예천군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연계 활동 사업
3.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4. 제6조의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

제10조(지원제외 대상) 지역생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
2. 그 밖에 각종 법령 위반으로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 또는 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1조(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정책의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호의 업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주요 생산 품목을 생산하고 구매·판매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
2. 전통시장, 마트, 외식업 대표 등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대표
3. 소상공인 기관·단체
4. 기타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람

제13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군수는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